

아동 보호를 위한 비공개 원칙, 공익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2023헌마1114 결정의 의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 문제 제기: 공익보도와 비공개 원칙의 충돌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대개 불편하다. 사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아동의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공익보도는 쉽게 ‘자극적 소비’로 오해받고, 반대로 철저히 피해아동을 익명 처리할 경우 ‘실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불편함은 추상적인 윤리 논쟁이 아닌 법적 분쟁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를 목격할 수 있는 보도가 바로 ‘정인이 사건(양친 입양아동 학대 사건)’으로 알려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다. 2021년 1월 2일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과, 1월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이 방영되었다. 제작진은 피해아동의 입양 전 이름과 생년월일, 입양 전후의 얼굴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고, 특히 얼굴을 모자이크 등의 별다른 편집 없이 노출하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작진은 얼굴 공개에 대해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를 가린 채로는 피해의 실체를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보도는 공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법적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방송 얼마 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양친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대하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방송을 통해 피해아동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피해아동이나 신고자 등의 신원과 사진을 언론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¹⁾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이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하여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실명·얼굴 등 식별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피해아동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기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²⁾

경찰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 보도에 대하여 2022년 5월 2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 역시 2022년 9월 23일, 한 차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결국 2023년 6월 23일, 검사는 범죄 성립은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2023년 9월 20일, 이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주요 취지는 이러하다. 피해아동이 사망했다라도 이 보도금지 조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방송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방송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얼굴 공개의 ‘허용’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얼굴 공개가 정당화되기까지 요구되는 조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결정문에 담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에서 예외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 사정은 무엇이었는가.

2. 아동학대 보도금지 규범과 그에 따른 긴장

‘피해아동의 얼굴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서만 도드라진 문제는 아니었다. 구미 3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1)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② (생략)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한 방송사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초등학생 제자들을 폭행·욕설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피해아동 증언은 모자이크 처리한 채 A씨의 실명·얼굴·경력·사건 발생지를 공개하였다. A씨는 해당 보도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이라며 방송사 기자와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은 약식기소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2헌가4 결정).

발생할 때마다 피해아동의 얼굴과 이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다.³⁾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거나 제도적 실패를 점검하기보다 ‘충격’, ‘반전’ 등 자극적인 언어로 사건을 소비하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통해 공분을 극대화하는 보도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체계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원 공개가 공익에 기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설계되었다.⁴⁾ 매스미디어를 통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사생활 침해 여부나 공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입법적 선택으로 여겨져 왔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언론과 출판물 종사자에게 부과하는 비밀엄수 의무는 꽤 높은 수준이다.⁵⁾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등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없다. 보도의 대상이 피해아동 본인인지, 가해자인지, 신고인인지와 무관하게, ‘사건과 관련되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전반이 포괄된다.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나이·직업·용모와 같이 개별 정보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더라도 결합될 경우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 역시 금지의 대상에 포함된다.⁶⁾

이와 같은 엄격한 의무는 아동학대 보도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사생활 노출과 2차 피해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낙인과 고정된 이미지가 장기적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⁷⁾ 2021년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은, 언론이 피해아동 등의 신상정보나 사진을 공개할 경우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러 하였다.⁸⁾

대법원 역시 범죄 보도가 공익적일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특정 가능 정보 공개까지 동일한 공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아동 보호’라는 공익을

3) 송지혜, (2021, 4, 6), 무엇이 바꾸지 못한 피해 아동 신원 공개 - 구미 아동학대 보도에서 공익과 인권은 설 자리를 잃었다, 시사N, 제707호.

4) 박경규, (2021), 아동학대 피해자 신원 공개 규정엔?, 관훈저널, 159, 48-56.

5) 김민정, (2021), 아동학대 보도와 피해자 신원공개 기준, 관훈저널, 158, 52-5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6) 미국에서도 피해자 신원 보호의 필요성은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 미국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이 1998년 발간한 〈New Directions from the Field〉는 성폭력 및 아동 피해자 보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식별정보 공개를 자제하고, 취약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보도윤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ffice for Victims of Crime, (1998), New Directions from the Field: Victims' rights and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U.S. Department of Justice.).

7)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미국 신문 보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아동 피해자의 식별 가능 정보가 기사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보도가 피해자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Jones, L. M., Finkelhor, D., & Beckwith, J. (2010). Protecting victims' identities in press coverage of child victimization, *Journalism*, 11(3), 347-367. 참조

8)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10, (2021, 4, 5.)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 규범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 실무를 규율하는 다양한 기준도 비슷한 방향으로 축적되어 왔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관해 정리된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유니세프의 미디어 가이드라인 역시 공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원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⁹⁾ 언론중재 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과 별개로 '아동학대사건 보도(제6조의2)¹⁰⁾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학대행위자·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초상·성명·주소·나이·직업 등 특정 가능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학대행위나 피해상태의 과도한 상세 묘사 및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 금지에 대하여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도 피해아동 식별 가능성을 이유로 핵심 장면을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익적 보도가 위축된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공개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¹¹⁾ 이는 보도금지 규정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여전히 입법적 논쟁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3.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건이 아니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피해아동'에 관한 보도금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방송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검사가 위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이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

9)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한국기자협회, (2009), 인권보도준칙; UNICEF, Guidelines for journalists reporting on children.

10)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0, (2025, 12, 26.)

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나.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먼저, 피해아동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도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생존 여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이 피해아동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공개한 이상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여부는 사안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유사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원용하여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얼굴 등 실제 영상·사진 노출이라는 행위태양, 방송의 목적과 맥락, 대체수단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지점에서 현재는 이 보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 여부¹²⁾를 공들여 실시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지속적 학대 정황과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가해자 책임의 실현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방송 시점 또한 가해자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고, 수사·기소의 적정성에 관한 공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해아동 얼굴의 실제 영상과 사진 노출이 단순한 자극적 제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 해명의 진위를 검증하고 지속적 학대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멍의 양상, 피부색 변화, 표정 변화 등은 모자이크 처리나 재연 영상만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전달이 곤란하고, 전문가 검증 역시 실물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법익 균형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입법 목적은 더 이상 관철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보호법익이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왜곡되고, 끔찍한 피해 장면으로 박제되며,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편견이 확대 재생산될 위험을 방

12) 대법원은 정당행위 판단과 관련하여 행위의 목적·수단·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이 결정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제대로 심사했는지’를 본 것이기에, 대법원 기준으로 심사가 필요했다.



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편집 방식, 자료의 취득 경위, 방송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침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실현,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이 사건 방송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기소유에 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대상 결정에 대한 평가

이 결정의 실질적 함의는 ‘공익이면 보도가 허용된다’는 일반론의 확인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당행위 여부는 목적·수단·법익형량에 대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있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아동의 경우에도, ‘사망’이라는 사정은 적용배제 사유가 아니라 법익형량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도 밝혔다. 즉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보호목적은 관철될 수 없게 되었으나, 사망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인격적 이익 및 2차 피해 방지라는 보호법익은 여전히 존속하며, 그 침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공익적 보도의 보호이익과 형량하여야 한다는 판단 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 '사망했으니 공개 가능하다'는 단순화된 논리를 차단하면서도, 사건의 목적과 수단, 편집 방식, 대체수단의 가능성, 침해 위협의 현실성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정당행위 판단 기준을 사후적 종합 평가의 틀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예측가능성 문제를 여전히 남긴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제작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체수단 검토, 편집상 최소침해 조치를 갖추어야 정당행위 심사에서 설득 가능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범위까지 사실조사를 수행해야 '수사미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은 '원칙은 금지, 예외는 엄격한 사후 형량'이라는 틀을 재확인하였으나, 그 예외의 작동 조건을 사전적으로 구조화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함께 가진다.

4. 결어

현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규범구조를 전제로 하면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그 성립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보도에서 반복되어 온 긴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아동 대상 폭력 사건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적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사건의 맥락과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확산되면서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이 증폭되는 2차 피해의 위험은 이미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¹³⁾ 특히 언론의 속보경쟁과 선정적 보도 관행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직접적 피해 이후에도 추가적 사회적 불이익과 고통이 발생한다는 판단은 보도금지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보호법익을 잘 설명해준다.¹⁴⁾ 아울러 이번 결정은 학대 피해 아동의 얼굴 공개의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기보다, 그러한 공개가 왜 불가피했는지, 대체수단은 없었는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를 엄격히 따져 묻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평가는 언제나 예측가능성의 한계를 남긴다. 언론보도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회복은 쉽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 역시 충분히 실효적이지 않다.¹⁵⁾ 이번 현재의 판단도 사후적 평가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13) 법무부, (2014),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p. 85.

14) 법무부, (2014),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p. 88.

15) 법무부, (2014),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pp. 1-3, p. 149.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피해아동 사망이라는 사정을 법률 적용 배제의 근거로 단순화하지도 않고, 보호법익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그 무게와 침해 위협의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형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얼굴 공개의 허용 범위를 확장한 판례라기보다, 예외 판단의 심사 틀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한 판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